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내포신도시 RH-14BL) [국민주택(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BL)
▌공급대상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727세대 중 국민주택(공공분양)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총 727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공공분양) 605세대(84㎡),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 122세대(119㎡)

■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 041) 635-158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일	계약체결
일정	2025.11.28.(금)	2025.12.08.(월)	2025.12.09.(화)	2025.12.10.(수)	2025.12.16.(화)	2025.12.19.(금) ~12.27.(토)	2026.02.09.(월) ~ 2026.02.11.(수)

※ 국민주택(공공분양) 신청 주의사항 ※

■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 신청 시 ①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이 상이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국민주택(공공분양) (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민영주택 (별도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전용면적 84㎡	전용면적 119㎡

■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41-635-1588)**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청약홈 및 LH 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11.27.)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8.(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86**이며, 이 공고문은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사업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 디엘이앤씨㈜ / ㈜도원이엔씨 / ㈜삼우]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 / ㈜도원이엔씨 / ㈜삼우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모두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제3호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홍성군, 예산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됨)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2024.10.01.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 포함)의 소명서류 제출 불가(해외체류 등 모든 사유 불인정), 적격 여부 심사 시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불가 등 모두 불인정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630천원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ˑ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시행일(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2018. 12. 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지역 우선 공급 기준(13페이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자로 청약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인정
(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 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해당 없음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 재당첨 제한, 전매 금지, 거주의무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청약 신청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유의사항
출 생	•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 자격검증서류 미제출한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계약체결 불가
입 양	•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부모급여·수령내역 등)	※ 입주시까지 입양자격 유지 필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및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계약체결 불가
임 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및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 및 계약체결 불가

※ 상기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직장 및 금융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며, 그 외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5.12.08.(월)**	**2025.12.09.(화)**	**2025.12.10.(수)**	**2025.12.16.(화)**	**2025.12.19.(금) ~ 2025.12.27.(토) (9일간, 10:00~17:00)**	**2026.02.09.(월) ~ 2026.02.11.(수) (3일간, 10:00~17:00)**
방 법 / 장 소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주택전시관(10:00~13:00) ※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주택전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일정 등 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1순위, 2순위 기준

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이하 같음)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3: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및 주소 오류기재 또는 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명단과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제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름)

<table>
<tr><td>대상증서</td><td>1.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2. 발코니확장 계약서 : 도급증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td></tr>
<tr><td>납부기한</td><td>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td></tr>
<tr><td>납부방법</td><td>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td></tr>
<tr><td>납부금액</td><td>1. 아파트 공급계약서
<table>
<tr><th>계약서 기재금액</th><th>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th><th>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th><th>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h><th>10억원 초과</th></tr>
<tr><td>세액(균등납부)</td><td>2만원</td><td>4만원</td><td>7만원</td><td>15만원</td><td>35만원</td></tr>
<tr><td>사업주체 부담</td><td>1만원</td><td>2만원</td><td>3만5천원</td><td>7만5천원</td><td>17만5천원</td></tr>
<tr><td>분양계약자 부담</td><td>1만원</td><td>2만원</td><td>3만5천원</td><td>7만5천원</td><td>17만5천원</td></tr>
</table>
2. 발코니확장 계약서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 비용은 1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td></tr>
</table>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충청남도개발공사)와 분양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납부하며, 분양 계약 체결 시 분양 계약자는 공급금액에 따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1/2의 금액을 납부하여 구입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및 전액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필히 제출하여여 하며, 해당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보관(분실 방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전달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의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 비용은 1천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인지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소비세과(☎126), 전자수입인지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결제원 고객지원안내처(☎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매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부담액(인지세의 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1회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 리 방 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 전체(청약홈 및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 [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는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 불가)

Ⅰ. 공급 규모 · 공급대상 ·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727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605세대 (특별공급 451세대, 일반공급 154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계		
2025000586	01	084.6784A	84A	84.6784	25.7165	110.3949	8.9941	44.0189	163.4079	49.6413	359	34	18	36	36	53	18	71	266	93	17
	02	084.6904B	84B	84.6904	25.7409	110.4313	8.9954	44.0251	163.4518	49.6483	126	13	6	13	13	18	6	25	94	32	6
	03	084.6571C	84C	84.6571	26.9424	111.5995	8.9919	44.0078	164.5992	49.6288	120	13	6	12	12	18	6	24	91	29	6
합계											605	60	30	61	61	89	30	120	451	154	29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당일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출입공간, 세대 내부벽체 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지하코아),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목에 의거하여 대피공간 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면적과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대지지분은 사업지 대지면적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합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합계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08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주택타입	동·호 라인	층별	세대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6-06-25	2026-10-23	2027-02-25	2027-06-25	2027-10-25	2028-02-25		
084.6784A	84A	101동(1호,2호,3호), 102동(1호,2호,3호), 103동(2호),104동(1호), 106동(3호), 107동(2호,3호), 108동(1호,2호,4호), 109동(1호,2호,4호)	1층	16	기본형	382,70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8,270,000	39,810,000	75,000,000
			2층	17	기본형	395,20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43,560,000	75,000,000
			3층	17	기본형	403,50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6,050,000	75,000,000
			4층	17	기본형	407,70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0,770,000	47,310,000	75,000,000
			5~19층	250	기본형	416,0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9,800,000	75,000,000
			20~25층	42	기본형	420,20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51,060,000	75,000,000
084.6904B	84B	101동(4호), 102동(4호), 103동(1호,4호), 106동(4호), 107동(1호)	1층	2	기본형	378,300,000	37,830,000	37,830,000	37,830,000	37,830,000	37,830,000	37,830,000	37,830,000	38,490,000	75,000,000
			2층	4	기본형	390,600,000	39,060,000	39,060,000	39,060,000	39,060,000	39,060,000	39,060,000	39,060,000	42,180,000	75,000,000
			3층	6	기본형	398,80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44,640,000	75,000,000
			4층	6	기본형	402,90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5,870,000	75,000,000
			5~19층	88	기본형	411,20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8,360,000	75,000,000
			20~25층	20	기본형	415,30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9,590,000	75,000,000
084.6571C	84C	103동(3호), 104동(2호), 105동(2호), 107동(4호), 108동(3호), 109동(3호)	1층	4	기본형	386,90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41,070,000	75,000,000
			2층	6	기본형	399,50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44,850,000	75,000,000
			3층	6	기본형	407,90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0,790,000	47,370,000	75,000,000
			4층	6	기본형	412,20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1,220,000	48,660,000	75,000,000
			5~19층	86	기본형	420,60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51,180,000	75,000,000
			20~25층	12	기본형	424,80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42,480,000	52,440,000	75,0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제세공과금(인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공급금액 30%) 미납 시 입주는 불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미납한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를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충청남도개발공사
	중도금			
	잔금			

※ 각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각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각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통장 이용 등 계약금 납부 주체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 공사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안내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 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6-06-25	잔금(80%) 입주 시
84A	2,221,900	222,190	222,190	1,777,520
84B	4,139,900	413,990	413,990	3,311,920
84C	3,733,600	373,360	373,360	2,986,880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납부금액(비율)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 1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충청남도개발공사
중도금	공급금액 10%	2026-06-25(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 1회차 동일)			
잔금	공급금액 8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주택전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Ⅷ. 지구 및 단지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선택품목(Ⅱ,Ⅲ) 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Ⅱ)

※ 추가선택품목(Ⅱ) 관련 제반사항(선택·계약·설치 등)은 민간사업자(디엘이앤씨㈜) 책임으로 진행하며, 충청남도개발공사와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체결(2026.02.09(월)~2026.02.11.(수)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		설치위치(변경)	설치대수	판매가격	제조사	비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84 A/B/C	일반형	선택1	거실+침실1	실내기2 / 실외기1	3,500,000	삼성/LG	택1 홈네트워크 연경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장착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4 / 실외기1	6,500,000		
		프리미엄형	선택1	거실+침실1	실내기2 / 실외기1	3,800,000	LG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4 / 실외기1	7,1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고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배관이 거실, 침실1에 기본으로 설치 예정이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용 배관과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천장형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과 프리미엄형은 세대 내 혼용 선택 불가합니다. (LG 제조사 기술적 호환 불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유상옵션 납부일정/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금액(비율)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 10%	계약 시	1005-504-860127	우리은행	디엘이앤씨(주)
중도금	공급금액 30%	2026-06-25(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 1회차 동일)			
잔금	공급금액 6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Ⅱ) 납부계좌로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인 추가선택품목(Ⅱ)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Ⅱ)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Ⅱ)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Ⅱ) 비용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 체결 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상기 기재된 지정일에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 추가선택품목(Ⅲ) 관련 제반사항(선택·계약·설치 등)은 민간사업자(디엘이앤씨㈜) 책임으로 진행하며, 충청남도개발공사와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일정 추후 안내)

(1)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스타일별로 구성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각 스타일간 개별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팬트리 도어(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11,240,000	10,930,000	11,550,000	※ 스타일 선택시, 해당 스타일의 구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스타일간 개별 품목의 교차선택은 불가함
	주방 상,하부장	주방 상,하부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주방 상판/벽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기본형(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상판매입 콘센트				
	화장대	화장대(이탈리아산 푸트라 PET)+화장대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화장대 벽등+드레스룸 도어(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2) 현관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공통	현관 중문	3연동 도어	1,800,000			
	현관 팬트리 선반	POST형 시스템 선반	520,000			
미니멀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장 상판(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가구 조명+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팬트리 도어(PET)	1,920,000			
내추럴 클래식		오픈형 신발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신발장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가구 조명+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팬트리 도어(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2,090,000			

(3)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바닥재	광폭 강마루	MISTY FLEX	2,260,000	2,230,000	2,230,000	
벽	디자인 월(택1)	거실 창호면+거실 후면+침실면 복도	2,100,000	2,290,000	1,990,000	
		거실 창호면+거실 후면+침실면 복도 ※침실3 드레스룸 선택 시 구매 가능(침실3 드레스룸 복도면 제외)	1,840,000	2,030,000	1,710,000	
목문	인피니티 도어(택1)	인피니티 도어(침실1)	1,350,000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디자인 월 선택시 구매 가능	5,400,000			

(4) 주방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미니멀	주방벽면 마감재 업그레이드&가구 조명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1,900,000	2,020,000	2,230,000	
	냉장고장	냉장고장 기본형(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730,000	1,560,000	1,690,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양면수납형(PET)+상판(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 상판매입 콘센트	1,580,000		1,580,000	
		아일랜드장 양면수납 식탁결합형(PET)+ 상판(엔지니어드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상판매입 콘센트		2,630,000		
내추럴 클래식	냉장고장	냉장고장 기본형(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선반 수납형 키큰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2,760,000	2,540,000	2,730,000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 양면수납형(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상판매입 콘센트	2,650,000		2,650,000	
		아일랜드장 양면수납 식탁결합형(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상판매입 콘센트		4,150,000		

(5) 침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공통	침실1 드레스룸 선반		POST형 시스템 선반	390,000	670,000	370,000	
미니멀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 (택1)	일반형	붙박이장(PET)+디자인 월	4,430,000		4,070,000	
			붙박이장(PET)+디자인 월+팬트리 도어(PP)+POST형 시스템 선반		4,440,000		
		의류 관리기형	붙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디자인 월	4,430,000		3,830,000	
			붙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디자인 월+팬트리 도어(PP)+ POST형 시스템 선반		4,590,000		
	침실1 붙박이장		와이드형 붙박이장(PET)	2,670,000	2,570,000	2,680,000	
내추럴 클래식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 (택1)	일반형	붙박이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디자인 월	5,900,000		5,410,000	
			붙박이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디자인 월+팬트리 도어(PP)+ POST형 시스템 선반		5,690,000		
		의류 관리기형	붙박이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의류관리기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디자인 월	5,900,000		5,030,000	
			붙박이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의류관리기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디자인 월+ 팬트리 도어(PP)+POST형 시스템 선반		5,880,000		
	침실1 붙박이장		와이드형 붙박이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4,140,000	3,980,000	4,150,000	
공통	침실2 붙박이장(택1)		일반형 붙박이장(PET)	920,000			
			침대 책상 결합형(일반형) 붙박이장(PET)+상판매입 콘센트	5,480,000	5,580,000	5,480,000	※매트리스 제외
	침실3 붙박이장(택1)		와이드형 붙박이장(PET)	2,270,000	2,420,000	2,270,000	
			데스크형 붙박이장(PET)+상판매입 콘센트+가구 조명	3,980,000	4,040,000	3,980,000	
	침실3 드레스룸		POST형 시스템 선반+팬트리 도어(PET)+디자인 월	1,580,000	1,600,000	1,610,000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택1)	내추럴	침대(내추럴 헤드보드+사이드 테이블2개+독서등)+다운라이트 특화+ 통합 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5,340,000			※매트리스 제외/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브라운	침대(브라운 헤드보드+사이드 테이블2개+독서등)+다운라이트 특화+ 통합 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5,440,000			
	침실1 매트리스		ACE SUITE GRAND (킹 매트리스 가로 1,600mm, 세로 2,000mm, 높이 320mm)	1,930,000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구매가능
	침실2 매트리스		ACE SUITE COZY (슈퍼싱글 매트리스 가로 1,100mm, 세로 2,000mm, 높이 270mm)	1,080,000			※침실2 침대 책상 결합형 붙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6) 조명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거실/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욕실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매입형 욕실장 하부 간접 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	3,950,000	4,280,000	4,080,000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거실/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욕실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매입형 욕실장 하부 간접 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 ※침실3 드레스룸 선택 시 구매가능(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1개 제외)	3,910,000	4,240,000	4,040,000	

(7)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공통	복합환풍기	욕실1+욕실2	1,2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욕실2	750,000			

(8) 다용도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공통	탄성코트	세라믹 탄성코트(다용도실/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대피공간))	1,140,000	1,050,000	1,160,000	

(9)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빌트인 전기오븐(택1)		나비엔 매직	나비엔 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 (EOB-5004)	540,000			
		LG	LG 광파오븐 (MZ385EBTA)	450,000			
		삼성	삼성 전기오븐 (NQ50T8539BK)	86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디오스 14인용 (DIE6PT)	1,650,000			
빌트인 의류관리기		LG	LG 스타일러 5벌 (SC5MBR53)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의류관리기형) 선택 시 구매가능	1,800,000			
빌트인 인덕션 (택1)		나비엔 매직	나비엔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 (ERI-7704)	1,850,000			※ 옵션 미 선택 시, 하이라이트 2구, 인덕션 1구 전기쿡탑으로 설치
		LG	LG 인덕션 3구 (BEI3GQBI)	1,000,000			
		삼성	삼성 인덕션 3구 (NZ63B5056AK)	97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미니멀	LG	LG 오브제 4도어+3도어 김치냉장고+냉장고장(PET)+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PET) / (M62BAAA332(G)+Z334AAA151(G)+OC-KIT7(설치키트))	8,920,000	8,950,000	8,980,000	※ 냉장고장 선택 시 구매 가능
		삼성	삼성 비스포크 냉장+변온+김치+냉장고장(PET)+인출식 수납형 키큰장(PET) / (RZ24C5(9/8)GO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RA-COOK1DAA(2set))	6,980,000	7,010,000	7,050,000	
	내추럴 클래식	LG	LG 오브제 4도어+3도어 김치냉장고+냉장고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 (M62BAAA332(G)+Z334AAA151(G)+OC-KIT7(설치키트))	8,790,000	8,830,000	8,880,000	
		삼성	삼성 비스포크 냉장+변온+김치+냉장고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인출식 수납형 키큰장(이탈리아산 푸트라 PET) / (RZ24C5(9/8)GO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RA-COOK1DAA(2set))	6,840,000	6,890,000	6,950,000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선택 옵션은 인테리어 스타일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 분리 판매 및 스타일 간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스타일별 디자인(색상 포함), 재질 및 구성은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스타일과 연계된 개별 품목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벽체, 거실 및 복도의 벽체, 마루 등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붙박이가구 설치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붙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데스크형 붙박이장, 침대 책상 결합형 붙박이장 선택 시 가구 상판에만 매입형 콘센트가 설치되며 데스크 하부 벽에는 콘센트와 인터넷포트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을 제외한 침실2, 침실3, 침실4 붙박이장(데스크형, 침대 책상 결합형 포함) 선택 시 스타일과 상관없이 미니멀 스타일로 적용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자재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엔지니어드 스톤 개별 선택은 불가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피니티 도어 상부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인피니티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인피니티 도어 선택 시 욕실2도어 마감재는 디자인월과 패턴이 동일한 인테리어 시트지로 적용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에 포함된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다운라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며, 조명 특성상 하부에서 직접 광원을 바라볼 경우 눈부심이 있습니다. 주택전시관 확인 후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별도의 등박스 없이 커튼박스 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욕실 내 조명 1개소는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로 변경되며 스위치 점등 시 일반 조명과 동일하지만 스위치 소등 시 센서 기능을 통해 미등이 점등됩니다.
- 스타일 선택 및 가구, 가전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선택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 포함), 설치 위치, 결합 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안내한 내용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LG 오브제 설치 시 타입에 따라 결합되는 가구가 상이하며,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2구+가스1구)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유상옵션 납부일정/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금액(비율)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 10%	계약 시	1005-904-841414	우리은행	디엘이앤씨(주)
중도금	공급금액 30%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잔금	공급금액 6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Ⅲ) 납부계좌로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인 추가선택품목(Ⅲ)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Ⅲ)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추후 안내될 지정일에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Ⅱ,Ⅲ) 유상옵션 관련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에는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이 불가합니다
※ 판매가격은 판매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후 원가 변동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차액 정산,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디 버추얼), 홍보물 내용의 마감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상품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내용과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Ⅱ,Ⅲ) 계약 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6.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사항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기본형 PL창호,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환기시설, 스피커, 소방감지기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조명등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금액	35,999,000	36,011,000	36,392,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공급계약 체결기간 시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 마이너스옵션 신청 또는 마이너스옵션 선택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Ⅱ,Ⅲ)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관련된 품목은 반드시 소방시설 완공검사 전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난방코일, 난방분배기, 급배수 위치 등이 확장형과 상이합니다.

7. 입주금 안내,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 안내 관련 유의사항**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가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 종료일(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를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한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홍성군, 예산군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독세대원 제외)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1.28.(금)**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10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전국 거주자**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 무방)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 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 부적격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함"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해당조항 주택유형 적용기준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청약 접수 전 본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 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45,630천원
이하</td><td colspan="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50,200천원 이하**	**54,76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접수 전 본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 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시책 추진 대상자(혼인 및 출산장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담당기관 및 기관추천 배정 세대수

구 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시책 추진 대상자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응)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혼인장려	출산장려				
담당기관		충남서부 보훈지청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충청남도청 청년정책관	충청남도청 인구정책과	충청남도청 복지보훈 정책과	충청남도청 외국인정책과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소
배정 세대수	84A	18	2	10	2	4	6	6	1	1	1	1
	84B	6	1	4	1	1	2	2	-	1	-	1
	84C	6	1	4	1	1	2	2	1	-	1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2025.12.08.)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40㎡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수에 따라 추첨공

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 1인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인 1인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홍성군, 예산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홍성군, 예산군) 연속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의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홍성군, 예산군),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 제한사항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전매 제한 안내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5.12.16.)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제101조에 따라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한하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는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민영주택(일반공급)과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민영주택(일반공급) 당첨만 유효 / 국민주택(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동·호수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번 공고의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전시관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

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공급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예비대상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신청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5.12.08.(월)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주택전시관 (10:00~13: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5.12.09.(화)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09:00~16:00)
	2순위	2025.12.10.(수)		

※ 모바일(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①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10:00~13:00)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창구 접수시간 :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2.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당일 접수시간 내에 청약신청 취소 및 재접수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주택전시관(☎041-635-15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접수 시 신청자격(순위확인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신청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방법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PC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 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16(화) ~ 2025.12.2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2.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안내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공급계약체결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정
2025.12.16.(화) 청약Home 및 모바일앱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2025.12.19.(금) ~ 2025.12.27.(토)** 9일간 (10:00~17:00)	**2026.02.09.(월) ~ 2026.02.11.(수)** (10:00~17:00)	추후 일정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 고지 (www.elife.co.kr)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주택전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 방문예약 등 운영방식은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당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전(주중)에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재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약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예비)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지역(홍성군, 예산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 급여수령내역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예비)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8.01.01. 전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상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로 지정)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개명일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예비 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 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 배우자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예비)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 급여수령내역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무주택자 여부 검증)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 주택전시관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서류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 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 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 결정세액이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반드시**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포함)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만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지역(홍성군, 예산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만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 급여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무주택자 여부 검증)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 주택전시관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①,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3.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주택전시관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본인	•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1/2) 납부 (전액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 전 주택형 1천만원 미만 책정으로 과세 기준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 없음.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위임장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분양대금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위약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 및 분양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은 경우 등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3.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예정시기 • 부대복리시설 관련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월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계약자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할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급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시니어라운지,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게스트하우스, 미니짐 등), 스터디룸, 어린이집, 생활지원센터, 경비실(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용역원휴게실, 키즈스테이션, 드포엠카페 등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5.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 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야간 센서 등	
욕실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공급계약 체결기간 (2026.02.09.~2026.02.11. / 10:00~16:00) 내 ※ 현장여건(건축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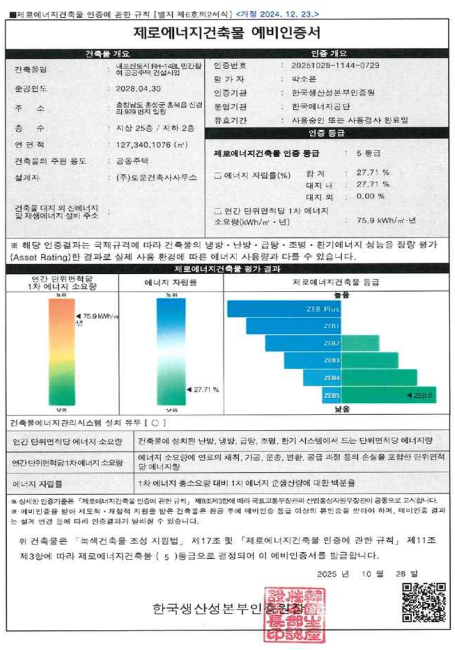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 게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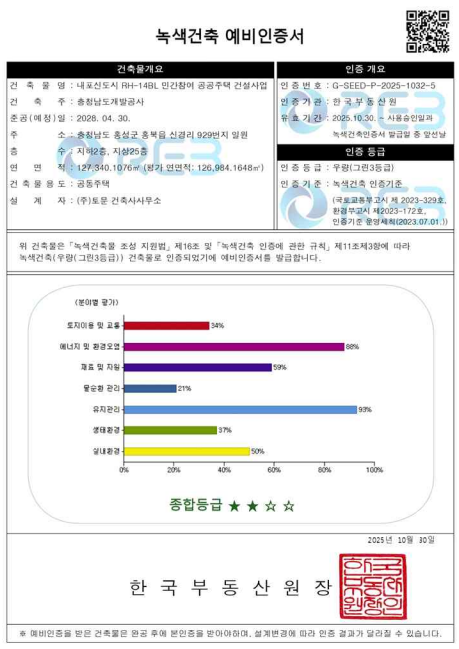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기준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정(22.7.29) 이후 신청분으로 해당사항 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9.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등 급
내진 중요도 Ⅰ	**Ⅶ - 0.20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4,271,138
	기간이자	712,664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16,312,757
	계	**51,296,559**

구 분				총 액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4,031,648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775,871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68,934
			도로포장공사	732,98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898,100
			부대시설공사	2,355,269
			계	**11,862,811**
		건축	공통가설공사	7,023,128
			가시설물공사	1,769,361
			지정 및 기초공사	1,559,649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71,007,891
			용접공사	-
			조적공사	1,069,993
			미장공사	1,116,659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1,848,557
			목공사	-
			가구공사	7,981,794
			금속공사	3,788,597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공사	8,446,200
			유리공사	125,538
			타일공사	1,336,086
			돌공사	4,512,647
			도장공사	1,673,122
			도배공사	1,403,930
			수장공사	19,949,166
			주방용 가구공사	-
			그 밖의 건축공사	1,660,077
			계	**136,272,395**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
			급탕설비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1,097
			난방설비공사	4,540
			가스설비공사	741
			자동제어설비공사	642
			특수설비공사	7,672
			공조설비공사	-
			계	**24,692**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0,885,044
			정보통신공사	5,419,458
			소방설비공사	2,834,002
			승강기공사	2,139,496
			계	**21,278,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8,805,496
			이윤	3,091,386
			계	**11,896,882**
	간접비		설계비	3,512,428
			감리비	10,797,500
			일반분양시설경비	8,736,418
			분담금 및 부담금	1,937,145
			보상비	901,65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9,931,575
			계	**55,816,716**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519,245
합계				**320,967,300**

※ 끝자리 이하 단수 반올림 인하여 천원 단위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상 호	금 액
경일감정평가법인	34,271,138,467원

11.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택지 가산비					
기간이자	말뚝박기 공사	흙막이 차수벽 공사	택지와 관련된 경비		소계
			감정평가수수료	지역난방부담금	
712,663,901	7,433,019,376	7,837,395,246	15,936,770	1,026,405,595	17,025,420,888

건축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 주택건설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법령개정		사업승인조건		소계
	홈네트워크	초고속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설치	기계환기설치	쓰레기 이송설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건강친화형 주택	외관특화	법정초과조경	
3,317,056,067	9,893,787,900	2,039,150,370	2,303,426,160	3,979,885,590	1,422,927,000	3,128,130,321	766,699,830	128,939,800	1,796,919,619	2,641,434,300	1,101,123,975	32,519,480,932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12.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기계, 토목, 조경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상 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경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금 액	9,219,044,000	717,409,000	861,047,000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충청남도개발공사 (310-82-05193)	DL이앤씨(주) (676-87-01904) ㈜도원이엔씨 (310-81-06180) ㈜삼우 (611-81-12455)	DL이앤씨(주) (676-87-01904) ㈜도원이엔씨 (310-81-06180) ㈜삼우 (611-81-1245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14.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주택전시관 위치안내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
■ 운영시간 : 10:00~18:00
■ 분양문의 : 041-635-1588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주택전시관)
■ 인터넷 홈페이지 : www.elife.co.kr

Ⅷ. 지구 및 단지여건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및「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도원이엔씨, ㈜삼우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주)]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방식이 적용 됩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승인된 사업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으로 인해 홈네트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디엘이앤씨㈜, ㈜도원이엔씨, ㈜삼우이며, 대표사인 디엘이앤씨㈜가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공용벽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원, 인접대지(학교) 내 보도 포장 및 단지 내 보도포장, 연결 동선 연결 조경구간은 현장여건 또는 지자체,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목적 창고는 입주후 입주민의 하자 및 입주 편의를 위한 직원사무공간으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전기 발전기실 급배기/재연휀룸 급기/열교환실 환기를 위해 지상에 DA이 설치되며, 인접세대, 보행로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Mock-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인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사용승인도면으로 변경, 법적용어 사용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2.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단지에서 약 1.5km 내에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충예로 160)이 지하화된 시설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내포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산시설 등으로 인해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및 옹벽 시공구간은 현장 실 시공 시의 레벨 조정 및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옹벽 단차 조정/조경석 옹벽 종류 변경/경사각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위치,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지역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당사와 무관합니다. 해당부지 개발여건에 따라 일조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대지지분 등의 증감 발생 시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도로와 인접한 101동, 104동, 105동, 109동 세대는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시설이 설치될수 있으며 가스 정압기 설치 장소, 면적등 가스공사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옥외 실외기, 제연 휀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경로 등의 현장여건에 위치나 크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생활지원센터,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드포엠카페 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동 옥상 및 주동 측벽 태양광패널 및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중앙광장, 필로티,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 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는 주거와 비주거의 통합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성원 결정에 따라 용도별 별도 관리업체에 인수인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데크층 상부에 돌출되는 DA의 위치 및 크기, 그릴창의 크기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줄눈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기실, 저수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인접한 공개공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바랍니다.

■ 보육·교육 여건(국공립어린이집 등)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세대 규모는 727세대로,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 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 관할 지자체의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홍성군(홍성군에서 선정하는 위탁 운영자(원장)를 포함)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 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세대 규모는 727세대로,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입주 후「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 등을 통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의 운영 방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관련

- 사업구역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구역에서 유발되는 초등학생은 "홍주초(2026.03월 개교예정)", 중학생은 "내포덕산학군(내포중, 덕산중, 홍북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단,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사업구역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은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단, 관할 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임대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조디자인 건축시설물의 경우, 인허가과정 및 발주처 협의 등을 통해 분양 당시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청 협의 사항 및 인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내부의 건축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보도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를 둘러싼 도로 등(대지소유 : 아파트 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공공보행로에는 공공시설물이 이전 설치될 예정입니다.

4. 단지 내부여건

■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상부(데크층 및 지반층)에는 각종 배선, 배관, 옥외송수구함, 휀, DA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내부에는 쓰레기보관소 및 쓰레기이송설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이송설비는 자연지반 상부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 기반 조건으로 인해 단지 외곽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 쓰레기보관소와 이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지상 차로는 비상차로로 소방차, 구급차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사업승인 인허가 의견에 의해 필로티 동출입구 구조물 돌출 깊이가 구간별로 얕아지거나 깊어질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처리 이전 시점 협의중인 사항으로 주택전시관 모형과 CG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실시공 시 수정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 개선으로 인해 일부 조경 라인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인허가 사항에 의한 조정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 제연DA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저수조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건축허가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문주 앞 부출입구 옆에 위치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가 설치되어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 규모,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 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크기, 위치, 재질, 외부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무인택배보관소는 동출입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통합, 분리될 수 있고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지 내 각 동 필로티 및 진입로 인근 지상부분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2,103,106,107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107,108동 부근 야외 운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8동 부근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인근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저층부는 석재, 석채뿜칠 그 외 구간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되며, 향후 석재 종류, 줄눈, 색채 계획은 인허가 및 디자인, 시공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계획 유무 및 위치가 상이하며, 102,103,106,108,109동 일부 코어에 오렌지로비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내부 단차로 인하여 1층 세대에 계단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시지 바랍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사, 비상차량 및 보행자 전용 출입구이며, 주차장 출입구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옥상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인접세대, 보행자 동선 상의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고, 한전패드 위치 조정으로 인해 조경구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내 공개공지는 법상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전용할 수 없으며, 외부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 바랍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울타리, 가림막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옥상조경 포함)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요성금속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의 바닥 레벨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레벨, 조경 및 토목 계획(식재, 보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동 출입구 돌출 게이트의 폭 및 두께는 동 별로 상이하게 적용 될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부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쓰레기이송설비가 계획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쓰레기이송설비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는 동별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위치와 규격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대와 쓰레기이송설비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대와 쓰레기이송설비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현황

- 107,108,109동 지하층 인근에는 기계실/저수조/전기실/발전기실/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점검/가동시에 연기가 발생합니다.
- 사업승인 인허가 의견에 의해 필로티 동출입구 구조물 돌출 깊이가 구간별로 얕아지거나 깊어질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처리 이전 시점 협의중인 사항으로 주택전시관 모형과 CG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실 시공 시 수정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 개선으로 인해 일부 조경 라인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인허가 사항에 의한 조정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전면과 104, 105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조명간섭,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101/109동 사이와 104/105동 사이에는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자의 대기장소로 사용되오니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9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근생용 쓰레기 보관시설,쓰레기이송설비,근생주차장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실/휀룸의 DA가 101동 주동과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옥상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101동에 실외기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8,109동 사이 1층 부대시설(키즈라운지/방재실/MDF실) 옥상 상부에는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동인 108,109동에는 실외기 운영을 위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7동 측벽에는 기계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9동 인접한 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입주하는 상가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지하 하부에는 용역원휴게실, 108/109동 지하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피트니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1/109동 사이와 104/105동 사이에는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01/102/108동 사이에는 드포엠카페, 102/103/106/107동 사이에는 어린이집 및 놀이터 공간, 103/104/105동 사이에는 시니어라운지 및 조경공간, 103/105/106동 사이에는 게스트하우스, 108/109동 사이에는 방재실 및 키즈라운지/선큰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과 매우 인접한 동들은 주민들의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하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6동/107동 사이와 106/108/109동 서측은 인접공원으로 가는 경로가 신설될 예정이고, 101/102/103/104동은 홍주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어서 학교가는 길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경로의 세부사항은 준공 전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106동/107동 사이 경로는 단차 극복을 위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지 외부로 통하는 통로의 계획은 도시계획 및 주변시설 높이 변경등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으며, 주민외의 보행자가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01,102,103,104동은 홍주초등학교(예정)와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각 동과 홍주초등학교(예정)의 이격거리는 101동(약 28m), 102동(약 25m), 103동(약 30m), 104동(약 30m)이며, 괄호 속 치수의 이격거리는 학교건물 및 부속유치원 기준으로 해당 이격거리는 배치도상의 일부구간 이격거리로 산정한 것이며, 측정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2동과 106동 사이에는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며,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동측 단차레벨과 데크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계획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출입이 발생합니다.
- 101동,104,105,109동 사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인한 차량 진/출입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8동, 109동은 1층세대 주방창호 하단에 인접하여 휀룸 DA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치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 주변에는 연료전지실, 102동 하부에는 다목적창고, 104동 지하1층에는 용역원휴게실, 107/108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저수조/전기실/발전기실, 108/109동 지하층 주변에는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에 세대창고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세한 소음, 냄새,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1층~3층 일부 세대는 세대 인근에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기계실, 저수조실,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휀룸, 쓰레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의 경우 주동 전면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옥상 관리동선 관련 및 이용자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1층 및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주동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옹벽, 조경석, 산석 디자인 등의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05동 2호세대 전면에는 단지 단차 극복을 위한 부출입구간 공용 엘리베이터와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구간 보행자의 통행 및 엘리베이터의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102,103,106,107동 사이 공간에 위치하며, 키즈스테이션은 101/109동, 104동/105동 인근에 설치되어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확보를 위하여 단지내 공실세대 중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시 조례에 따라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공용에서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부 전기료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8동, 109동 지하1층 홀1개소에 커뮤니티로 출입이 가능한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커뮤니티시설 이용자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목적 창고는 입주 후 약 2년간 CS센터로 사용되며 기본 마감만 제공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 사무실을 약 2년간 지하1층에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S기간이 완료되면 관리사무소로 인계하여 활용방식 등은 관리사무소가 추후 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7,108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 주변에는 연료전지실, 107,108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저수조, 전기실/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동출입구 중 일부가 필로티 내에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 사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상1층 로비(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센서인식 거리에 따라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동출입구 자동문의 좌우 타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의 ELEV.홀 내부의 EPS/TPS,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등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이행, 관련법령 개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심의 인·허가 조건 이행,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옹벽 형식, 소단계획 및 조경계획 등이 변경되어 모형이나 현재의 설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등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연결송수구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에어매트가 계획 될 경우 해당구간의 식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각 동 출입구, 키즈스테이션, 쓰레기 처리장, 주동 1층 계단실, 최상층 계단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 동의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로가 설치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완충녹지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된 공간에 대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외부 주민운동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 등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민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에 주차 구역 분쟁에 대해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성/디자인/법적 계단계획에 따라 옥탑 출입구와 계단 형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모형/CG와 상이해질 수 있고, 추후 인허가를 도서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지붕층 및 측벽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옥내안테나 설치 위치는 101,102,103,104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의 중계 장치 설치 위치는 103,107,109동 지하주차장 1층 동 통신기기실에 설치 되며,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모든동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전 동 주동 지붕 및 일부동 측벽에 설치되며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 완료하여 그에 따라 설치 되어 이는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101,104,105,109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107,108동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식재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계획

- 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 외관디자인 돌출부는 추후 인허가 협의를 통해 돌출 깊이, 크기, 구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뿜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커튼월, 벽부형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용시설

- 104동 지하 하부에는 용역원휴게실, 108/109동 지하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피트니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01/102/108동 사이에는 드포엠카페, 102/103/106/107동 사이에는 어린이집 및 놀이터 공간, 103/104/105동 사이에는 시니어라운지 및 조경공간, 103/105/106동 사이에는 게스트하우스, 108/109동 사이에는 방재실 및 키즈라운지/선큰공간, 101/109동, 104/105동 인근에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주민공동시설 내부조명 및 외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물 외관디자인(벽/지붕 등)은 구조 계산, 인허가 진행 중 변경등의 사유로 모델하우스의 모형 및 CG와 디자인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제공), 비품(제공 안함)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실명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저층부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용시설의 프로젝트창의 위치/개소는 내부 건축계획에 맞게 일부 변경되어 모형/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8,109동의 하부 지하에는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고, 용역원휴게실은 104동 지하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기계실, 연료전지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제연),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일부 주동 측벽에 태양광 시설이 계획되어 발생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될 예정으로, 유지관리에 필요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큰 구역에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보일러 및 연도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 저수조 설치 예정이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등 동파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실외기실, 연료전지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000대, 지상 10대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3대, 총 1,013대로 일반, 경차 및 장애인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와 전기차 충전 공간은 추후 인허가를 통해 수량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 및 대수 산정은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 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 주차장은 지하 1~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진입 및 메인주행공간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이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구조 계산 등의 사유로 인해 택배차 회차가 불가한 일부 통로 발생 시, 해당구간은 사인물로 표시할 예정이며, 택배차 회차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전 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 위치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지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건축허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 상부 데크층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직통계단이 2개소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기계실, 연료전지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시스템(홈네트워크, 주차유도, 원격검침, 커뮤니티 예약 외)은 e편한세상 스마트홈 서비스에 최적화 설계되어있으므로, 사전협의 없는 변경 및 추가행위는 정상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사업지 대지면적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합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합계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우오수 맨홀이나 집수장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업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단위세대

■ 유의사항

- 단위세대 하향식 피난구 공간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필로티 세대의 최하층과 1층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출입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내부 구조(경량벽 포함)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2단 적층시 사전에 공간확인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위생기구, 액세서리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욕실화와 욕실 도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장 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및 복도 디자인 월 마감의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패널형 마감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등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패널형 마감재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몰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임의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세탁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건조기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본 단지는 열린 단지로 계획되어 출입제한을 위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를 통해 출입 가능한 옥상 공간은 공용공간입니다. 공용공간의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세대의 창호를 통해 접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창호 인근 외벽에 유지보수를 위한 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별로 필로티의 위치가 다르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배치되는 세대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전용 어플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요성금속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시공 될 예정입니다. 단위세대 내부에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으로 인해 유효폭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디퓨저, 바닥배수구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거실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욕실화와 욕실 도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 덕트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한 발코니 벽체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과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1층 세대와 필로티 최하층(필로티가 하부에 있는경우, 필로티의 상부층),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완강기 설치 세대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발코니가 연결 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개폐방향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적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엔지니어스톤,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감재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무늬,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카달로그 등 홍보물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 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현관, 비 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수전류, 바닥 배수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주방가구 후드장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수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119P타입 현관 팬트리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팬던트 조명용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팬던트 조명은 제공되지 않음.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침실1 벽체 세대 분전반 및 전열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향하여야 함.
- 현관 수납창고 벽면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할 것.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음.

7. 주택전시관 관련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84A타입, 119A타입 주택형의 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제작된 DA 등 설비 시설물의 규모는 기계설비 작동을 위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119P타입과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 또는 3층인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메지, 도장 줄눈,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등은 개발 예정인 사항을 포함한 사항들은 완공 예정년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대지경계선 외의 구간은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며, 대지경계선 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거실 실링팬,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9. 기타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